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나4271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혜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7.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가단3618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585,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266,821,075원 및 그중 원금 168,042,50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167,585,1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부터 2011. 8. 29.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 2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할인받았는데,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되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소외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081호 사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12. 12. “피고가 C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2011. 4. 1.부터 2011. 8.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68,042,504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위 168,042,504원을 초과하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7. 15. 위 제1심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와 C의 편취금액을 ‘168,042,504원’에서 ‘213,804,500원’으로 변경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21도10322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1.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8. 31.경 서울회생법원 2011회단14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2011. 9. 27. 회생개시결정이 되고, 2012. 9.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은 2016. 3. 4. 회생채무자인 피고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해 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합계 231,0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후 대여금채권으로 신고된 위 231,000,000원 전액이 시인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2012. 9. 24.경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위 231,000,000원 중 98%에 해당하는 226,380,000원은 면제되고 나머지 2%에 해당하는 4,620,000원이 변제할 채권으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13,804,5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213,804,500원에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원을 변제충당한 후 남은 167,585,1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51조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제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바,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그 신고 내용대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해 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약속어음의 할인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인가·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확정된 회생채권으로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각 약속어음의 할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대여금채권이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각 약속어음의 할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대여금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확정된 회생채권으로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위 형사판결로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반회생절차인 이 사건

회생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영환, 판사 조진용

목 록

연번	일자	어음번호	지급기일	액면금(원)	편취금(원)
1	2011. 04. 01.	E	2011. 08. 31.	10,000,000	5,220,000
2	2011. 04. 06.	F	2011. 09. 01.	10,000,000	11,000,000
3	2011. 04. 21.	G	2011. 09. 03.	15,000,000	15,300,000
4	2011. 05. 02.	H	2011. 09. 15.	15,000,000	10,000,000
5	2011. 05. 11.	I	2011. 09. 01.	6,000,000	8,810,000
6	2011. 05. 13.	J	2011. 09. 29.	10,000,000	10,890,500
7	2011. 05. 20.	K	2011. 09. 30.	10,000,000	10,000,500
8	2011. 05. 23.	L	2011. 10. 11.	10,000,000	3,250,500
9	2011. 05. 27.	M	2011. 10. 15.	12,000,000	5,450,500
10	2011. 05. 31.	N	2011. 10. 22.	10,000,000	22,001,000
11	2011. 06. 07.	O	2011. 10. 22.	10,000,000	10,000,000
12	2011. 06. 09.	P	2011. 10. 25.	12,000,000	8,600,000
13	2011. 06. 17.	Q	2011. 11. 03.	9,000,000	14,000,000
14	2011. 06. 22.	R	2011. 11. 04.	6,000,000	4,000,000
15	2011. 06. 30.	S	2011. 11. 08.	10,000,000	10,000,000
16	2011. 07. 01.	T	2011. 12. 29.	20,000,000	6,680,000
17	2011. 07. 04.	U	2011. 11. 16.	10,000,000	7,000,000
18	2011. 07. 20.	V	2011. 11. 20.	7,000,000	10,000,000
19	2011. 07. 27.	W	2011. 11. 29.	12,000,000	10,000,000
20	2011. 07. 29.	X	2011. 12. 13.	10,000,000	16,600,000
21	2011. 08. 12.	Y	2011. 12. 14.	7,000,000	5,000,000
	2011. 08. 17.				600,500
22	2011. 08. 26.	Z	2011. 12. 27.	10,000,000	5,000,500
	2011. 08. 29.				4,400,500
합계				231,000,000	213,804,500

